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3-160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.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마포나루 스페이스의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

○ 이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마포나루 스페이스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2) 추진 필요성

-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 인력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올리고, 안정적 시설운영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 운영, 메타버스 도서관 운영, 카페 임대관리 등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

라. 위탁시설 개요

1) 위치 : 마포구 마포대로 8, 호텔나루 1층

2) 규모 : 835.7㎡

3) 위치도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4. 5. 1. ~ 2027. 4. 30.(3년) 예정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4년 예산 기준)

1) 소요예산 : 261,896천원

2) 산출근거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261,896		
인건비	188,703	·기본급 및 제수당 등 4,716천원×5명×8개월	공무·현업직 생활임금 기준 준용 (※8개월분)
운영비	73,193	·9,149천원×8개월	청소용역, 공공운영비, 사무관리비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에 의거 구청장은 청소년 시설 및 구립 도서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
2) 마포나루 스페이스에 관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자. 기타사항

○ 민간위탁 추진일정(안)

-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: 2024. 1월
-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: 2024.2월 ~ 3월
- 협약체결: 2024. 4월
- 위탁운영: 2024. 5월 ~ 2027. 4월(3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(이하 “청소년시설”이라 한다)”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「청소년기본법」 등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.

8조(운영의 위탁)

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·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.<개정 2020.12.31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[개정 2021.5.6.]

<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6조(운영 및 관리)

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